

##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 시험명             | 시험<br>방법                   | 선발 예정          |    |     | 시 험 과 목                               |
|-----------------|----------------------------|----------------|----|-----|---------------------------------------|
|                 |                            | 직렬(직류)         | 직급 | 인원  |                                       |
| 제1회<br>임용<br>시험 | 공개<br>경쟁                   | 교육행정           | 9급 | 109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br>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교육행정<br>(장애인)  | 9급 | 9   |                                       |
|                 |                            | 교육행정<br>(저소득층) | 9급 | 2   |                                       |
|                 |                            | 전 산            | 9급 | 4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br>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
|                 |                            | 사 서            | 9급 | 13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br>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                            | 공 업<br>(일반전기)  | 9급 | 6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br>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 시 설<br>(일반토목)  | 9급 | 2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br>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 시 설<br>(건축)    | 9급 | 10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br>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경력<br>경쟁                   | 운 전            | 9급 | 9   | 1차: 사회<br>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 소계                         |                |    | 164 |                                       |
| 제2회<br>임용<br>시험 | 경력<br>경쟁<br>(특성화고<br>구분모집) | 공 업<br>(일반전기)  | 9급 | 2   | 1차: 물리<br>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 시 설<br>(일반토목)  | 9급 | 1   | 1차: 물리<br>2차: 토목일반, 측량                |
|                 |                            | 시 설<br>(건축)    | 9급 | 4   | 1차: 물리<br>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소계                         |                |    | 7   |                                       |
| 합계              |                            |                |    | 171 |                                       |

※ 제2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 물리는 물리학 I 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

※ 2023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응시 자격 제한함

##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
|      | 5과목                     | 3과목                    | 2과목                    |
| 시험시간 | 100분<br>(10:00 ~ 11:40) | 60분<br>(10:00 ~ 11:00) | 40분<br>(10:00 ~ 10:4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과목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나. 응시연령

| 구분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 9급 | 18세 이상 |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은 2023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6.12.31.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 다. 학력 · 경력 · 성별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등학교 특성화학과 포함) · 마이스터고 해당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3] 2023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참조

- 운전 직렬은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형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형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거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형승합차의 규격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경우를 말함

## 라.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강원도 소재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 가능함(거주지 제한 없음)

##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1) 공개경쟁임용시험[전산·사서 직렬]

- 아래 직렬(직류)의 응시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 시험명             | 구분       | 직렬 | 직류 | 직급 | 자격증 등 제한      |                                       |
|-----------------|----------|----|----|----|---------------|---------------------------------------|
| 제1회<br>임용<br>시험 | 공개<br>경쟁 | 전산 | 전산 | 9급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br>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                 |          |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br>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          | 사서 | 사서 |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2) 경력경쟁임용시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분모집 【공업(일반전기)·시설(일반토목)·시설(건축)】 직렬
  - 응시자격: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마이스터고 해당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응시 자격 제한
  - ※ [붙임3] “2023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참조
- 운전직렬
  - 응시자격: 면접시험일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증(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운전직렬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참고)

### 〈운전직렬 필기합격자 제출 서류〉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 주소변동 내역 포함한 것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② 제1종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원본지참)
  - ③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 [서식 1] 활용
    - \* 대형 승합자동차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 \* 경력은 운전을 주업무로 하며, 주 5일근무, 1일 8시간이상 상시근로 1년 이상의 경력을 말하는 것임. [상시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기간을 계산함]
  - ④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내역서 1부
  - ⑤ 운전경력 증명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3년간 없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서 발급 가능
- ※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필수서류이며, 제출기간은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합니다.
  - ※ 위의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비상시 근로 등)에는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해당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 ※ 응시자의 자의적인 해석, 응시자격 요건 미 충족,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장애인 구분모집(교육행정직렬만 해당)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교육행정직렬만 해당)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필기시험 문제 출제

- 필기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공동출제위원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공동출제 과목은 비공개하므로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구분   | 출제기관                  | 위탁출제 대상과목                                                                                                               | 공개여부 | 문제책 회수 여부 |
|------|-----------------------|-------------------------------------------------------------------------------------------------------------------------|------|-----------|
| 위탁출제 | 인사혁신처                 | <b>【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중】</b><br>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개   | 미회수       |
|      |                       | <b>【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 중】</b><br>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 공동출제 | 공동출제 위원회 (17개 시·도교육청)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비공개  | 회수        |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br>(취소마감일)                                        | 시험구분 | 시험장소<br>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br>발표일 |
|-------------|-------------------------------------------------------------|------|---------------|-----------|------------|
| 제1회<br>임용시험 | 4.10.(월) 09:00 ~ 4.14.(금) 18:00<br>[취소마감일 : 4.17.(월) 18:00] | 필기시험 | 5.22.(월)      | 6.10.(토)  | 7.12.(수)   |
|             |                                                             | 면접시험 | 7.12.(수)      | 7.28.(금)  | 8.7.(월)    |
| 제2회<br>임용시험 | 8.21(월) 09:00 ~ 8.25.(금) 18:00<br>[취소마감일 : 8.28.(월) 18:00]  | 필기시험 | 10.16.(월)     | 10.28.(토) | 11.13.(월)  |
|             |                                                             | 면접시험 | 11.13.(월)     | 11.24.(금) | 12.1.(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원서접수사이트(<https://edurecruit.kwe.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접수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온라인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kw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나. 응시수수료

| 계급 | 응시수수료  | 결제 방법                                                                                                                            |
|----|--------|----------------------------------------------------------------------------------------------------------------------------------|
| 9급 | 5,000원 |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본인) 결제<br><b>※ 결제 납부를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니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b><br><b>※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환불 가능하나, 취소 기간 후에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b> |

-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외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 자는 첨부 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환급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이며, 우편으로 청구 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고시관리담당  
(우편번호: 24223)

#### 다.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9Kbyte이상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과도한 보정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시험 당일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사진 파일 이름에 특수문자를 쓸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 라.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명      | 응시표 출력기간                                          |
|----------|---------------------------------------------------|
| 제1회 임용시험 | 2023. 5. 22.(월) 10:00부터 2023. 6. 10.(토) 10:00까지   |
| 제2회 임용시험 | 2023. 10. 16.(월) 10:00부터 2023. 10. 28.(토) 10:00까지 |

-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 유의사항

-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정·취소】 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까지 가능합니다.

- 3)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4) **【중복접수 불가】**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5) **【자격요건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6) **【학교장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제2회 임용시험)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 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7)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8)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9) **【가산점 적용 확인】**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 취업지원 의사상자, 자격증가점 신청자는 2023. 6. 12(월)까지 증명서를 [gwegosi@korea.kr](mailto:gwegosi@korea.kr)로  
 사본 제출하여야 함)

## 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2023년부터 가산점 신청자의 서류 제출 마감일은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이므로, 가점신청자는 2023. 6. 12.(월)까지 증명서를 gwegosi@korea.kr로 사본 제출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br>(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br>5% 또는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li> <li>•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li>•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li> </ul> |
| 의사상자 등 대상자<br>(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br>3% 또는 5%                  |                                                                                                                                                                     |
| 직렬별 가산대상<br>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br>3% 또는 5%<br>(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 직렬       | 직류       | 국가기술평가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가산 비율 |
|----------|----------|---------------------------------------------------------------------------------------------------------------------------------|---------------|-------|
| 교육<br>행정 | 교육<br>행정 | -                                                                                                                               | 변호사           | 5%    |
| 공업       | 일반<br>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 5%    |
|          |          | 기능장 : 전기                                                                                                                        |               |       |
|          |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 3%    |
| 시설       | 일반<br>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5%    |
|          |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          |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3%    |
| 건축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사           | 5%    |
|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3%    |
|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평가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2023년부터 가산점 신청자의 서류 제출 마감일은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이므로, 가점신청자는 2023. 6. 12.(월)까지 증명서를 [gwegosi@korea.kr](mailto:gwegosi@korea.kr)로 사본 제출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8

###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 채용목표 인원수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9 장애인 ·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10 합격자 결정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1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 +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10%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 +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11 응시자 유의사항 등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게시판에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나.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 전자담배 등의 전자장비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장비, 전산기기, 전자장비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마.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OM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아. 시험시간 도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편의제공 대상자 및 장애인 제외), 시험 시간에는 소음방지용 귀마개,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타.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강원도 내 모든 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임용시험 임용자: 2년,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자: 3년)

파.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고시관리담당(☎033-258-51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접수기간: 4. 10.(월) 09:00 ~ 4. 17.(월) 18:00까지

□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변경
  -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 기록연구 직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기존5년) 폐지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신규임용시험(연구사) 응시연령 하향

| 변경 전(현행) |        |
|----------|--------|
| 연구사      | 20세 이상 |
| 9급       | 18세 이상 |



| 변경 후            |               |
|-----------------|---------------|
| <u>연구사 · 9급</u> | <u>18세 이상</u> |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 삭제

-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 삭제

| 직렬 | 변경 전(현행)                                                                                                                       |
|----|--------------------------------------------------------------------------------------------------------------------------------|
|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br>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br>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변경 후              |
|-------------------|
| <u>&lt;삭제&gt;</u> |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전산직렬 응시자격증 삭제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직렬 | 변경 전(현행) |   | 변경 후                                                                                                                                         |      |
|----|----------|---|----------------------------------------------------------------------------------------------------------------------------------------------|------|
|    |          |   | 자격증                                                                                                                                          | 가산비율 |
| 전산 | 해당없음     |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br>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br>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br>정보처리, 정보보안)<br>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5%   |
|    |          |   |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3%   |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 적용

- 붙임 1. 운전경력증명서 서식 1부.  
2. 응시수수료 환급청구서 서식 1부.  
3. 2023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끝.